

#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6. 1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정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 (안 제2조)

1) 정원의 총수 : 779명 → 785명 (+6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757명 → 763명 (+6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 (안 제4조 관련 **【별표3】**)

1) 총 계 : 779명 → 785명 (+6)

2) 일반직 계 : 777명 → 783명 (+6)

- 6급 이하 계 : 727명 → 733명(+6)

## 3. 개정조례안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추가경정예산 반영 필요

### 다. 기타사항

#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'23. 5. 1. ~ 5. 22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
5) 비용추계서: 붙임

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의결

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79명”을 “78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757명”을 “76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문화회관	동
<b>총 계</b>	<b>785</b>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			
구청장	1	1				
<b>일반직 계</b>	<b>783</b>					
3급	1	1				
4급	5	3	1	1		
5급	44	19	2	5	1	17
6급 이하 계	<b>733</b>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1</b>					
6급 상당 이하 계	1		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 는 <b>779명</b>으로 하고, 다음 각호 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b>757명</b>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별표 3]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구청</th> <th>의회 사무국</th> <th>보건소</th> <th>문화 회관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 계</b></td> <td><b>779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정무직 계</b></td> <td><b>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 계</b></td> <td><b>777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44</td> <td>19</td> <td>2</td> <td>5</td> <td>1</td> <td>17</td> </tr> <tr> <td>6급이하 계</td> <td><b>727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별정직 계</b></td> <td><b>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상이하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구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문화 회관	동	<b>총 계</b>	<b>779</b>						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				구청장	1	1					<b>일반직 계</b>	<b>777</b>						3급	1	1					4급	5	3	1	1			5급	44	19	2	5	1	17	6급이하 계	<b>727</b>			-			<b>별정직 계</b>	<b>1</b>			-			6급상이하계	1			-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b>785명</b>----- -----.</p> <p>1. -----: <b>763명</b> 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별표 3]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구청</th> <th>의회 사무국</th> <th>보건소</th> <th>문화 회관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총 계</b></td> <td><b>785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정무직 계</b></td> <td><b>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일반직 계</b></td> <td><b>783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44</td> <td>19</td> <td>2</td> <td>5</td> <td>1</td> <td>17</td> </tr> <tr> <td>6급이하 계</td> <td><b>733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b>별정직 계</b></td> <td><b>1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상이하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구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문화 회관	동	<b>총 계</b>	<b>785</b>						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				구청장	1	1					<b>일반직 계</b>	<b>783</b>						3급	1	1					4급	5	3	1	1			5급	44	19	2	5	1	17	6급이하 계	<b>733</b>			-			<b>별정직 계</b>	<b>1</b>			-			6급상이하계	1			-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구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문화 회관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 계</b>	<b>779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 계</b>	<b>777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5	3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44	19	2	5	1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이하 계	<b>727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1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이하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구청	의회 사무국	보건소	문화 회관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총 계</b>	<b>785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일반직 계</b>	<b>783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5	3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44	19	2	5	1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이하 계	<b>733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1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이하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정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

## 2. 비용발생 요인

-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발생 : 779명 → 785명 (증6명)
  - 동 맞춤형복지팀 설치(복원)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: 6명 (도서관운영+3, 민방위보강+1, 동민원대보강+1, 동맞춤형복지확충+1)

## 3. 관련조문

-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, 제4조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(단, 봉급인상률 미반영)
  - 6급(26호봉), 8급(5호봉), 9급(3호봉)
- 증원인력이 7월 이후 충원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2023년도 비용은 6개월분을 산출함

### 나. 추계의 결과 : 1,372,956천원

-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,372,956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### 다. 채용조달방안

- 구비 : 1,372,956천원(5년간)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## 6. 작성자 : 기획예산실장 정 기 현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144,622	295,878	302,920	310,540	318,996	1,372,956
의존재원						
자체수입						
세 출	144,622	295,878	302,920	310,540	318,996	1,372,956
인 건 비	144,622	295,878	302,920	310,540	318,996	1,372,956
재원 조달	144,622	295,878	302,920	310,540	318,996	1,372,956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44,622	295,878	302,920	310,540	1,372,956
	지방세	144,622	295,878	302,920	310,540	1,372,956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시 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### 제30조(정원의 규정)

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를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~ ⑤ (생략)